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68

제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 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상 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50호	강득구의원	2024.7.2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4.9.24.)
	제2386호	서지영의원	2024.7.30.	
	제3366호	임오경의원	2024.8.29.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4.11.5.)는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 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의 경우에는 선수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초·중학교 학생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참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생선수 저변이 감소되는 등 매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됨.

이에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렁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3. 대안의 주요내용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에 대하여 기초 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학교체육 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를 "학생선수가"로, "허용할 수 있다"를 "허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	
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	
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u>학생</u>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u>선수가</u>
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u>허용하여야 한</u>
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u>다</u> .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에는 그 참가를 <u>허용할 수 있</u>	
<u>다</u>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